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53621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4. 9. 27.

판결 선고2024. 10. 25.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2021. 4. 22.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 중 각 5/18지분, 별지 목록 제5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3, 4부동산 중 7/18지분, 별지 목록 제6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부분은 22,222,2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 중 각 5/18지분, 별지 목록 제5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22,222,2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원고와 D 사이의 2012. 6. 29.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12. 12. 28. E 주식회사에게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7638), 위 법원은 2014. 1. 22. 'D은 원고에게 53,875,46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3. 11. 2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F(1996년 사망)와 G(2019. 3. 14. 사망) 사이에 자녀로 H(2020. 1. 1. 사망), D, I (2020. 3. 26. 사망)이 있다. 피고 B는 망 H의 배우자이고, 피고 C는 D의 자녀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변동관계 및 D, 피고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1, 2부동산

① G 사망 무렵 : G 3/9지분, H 4/9지분, I 2/9지분

② 2021. 4. 22.경 D, 피고 B 사이에 G의 3/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21. 4. 23.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2019. 3. 14.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③ 2021. 4. 23. 2020. 1. 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H의 4/9지분을 피고 B가 상속하여 등기

④ 2021. 4. 22.경 D, 피고 B 사이에 I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1. 4. 23. 위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0. 3. 26.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13. 접수 제29770호로 2021.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 마쳐짐.

⑥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 B에게 이전된 D의 지분 : $5/18 = ②$ 의 $3/18 [= G$ 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D의 지분 $2/18 (= 6/18 \times 1/3) + I$ 이 G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다시 D이 상속한 지분 $1/18 (= 6/18 \times G$ 에 대한 I 상속지분 $1/3 \times I$ 에 대한 D 상속지분 $1/2)$] + ④의 $2/18 (= 4/18 \times 1/2)$

2) 이 사건 3, 4부동산

① G 사망 무렵 : G $3/9$ 지분, H $2/9$ 지분, I $4/9$ 지분

② 2021. 4. 22.경 D, 피고 B 사이에 G의 $3/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21. 4. 23.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2019. 3. 14.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③ 2021. 4. 23. 2020. 1. 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H의 $2/9$ 지분을 피고 B가 상속하여 등기

④ 2021. 4. 22.경 D, 피고 B 사이에 I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1. 4. 23. 위 부동산 중 $4/9$ 지분에 관하여 2020. 3. 26.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⑤ 2021. 6. 1. 2021.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가 마쳐짐.

⑥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 B에게 이전된 D의 지분 : $7/18 = ②$ 의 $3/18$ (계산과정은 1)의 ⑥과 같다) + ④의 $4/18 (= 4/9 \times 1/2)$

3) 이 사건 5부동산

① G 사망 무렵 등기명의인 F

② 2021. 4. 22.경 D, 피고 B 사이에 F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21. 4. 23.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6. 8. 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③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13. 접수 제29770호로 2021.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 마쳐짐.

④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 B에게 이전된 D의 지분 : $1/2$

4) 이 사건 6부동산

① G 사망 무렵 등기명의인 I

② 2021. 4. 22.경 D, 피고 B 사이에 I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21. 4. 23.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③ 2021. 6. 1. 2021.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가 마쳐짐.

④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 B에게 이전된 D의 지분 : 1/2

라. D은 2021년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2.경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기초사실 다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이 사건 1, 2부동산 각 5/18, 이 사건 3, 4부동산 각 7/18, 이 사건 5, 6부동산 각 1/2 지분)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장남인 자신이 피고 B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가 2014. 5.경 기초사실 가항 기재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이 사건 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D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된 D의 2/9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지분이 매각되었던 점, 피고 C는 D의 자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1, 2, 5부동산 이 사건 1, 2부동산 중 각 5/18지분, 이 사건 5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2021. 4. 22.경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전득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1, 2부동산 중 각 5/18지분, 이 사건 5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1).

3) 이 사건 3, 4, 6부동산 사해행위 이후 피고 B가 이 사건 3, 4, 6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3, 4, 6부동산 중 각 D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75,685,981원²⁾인 사실, 피고 C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이 사건 1, 2, 5부동산 중 각 D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45,235,260원³⁾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이 95,194,2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3, 4부동산 중 각 7/18지분, 이 사건 6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2021. 4. 22.경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부동산 해당 지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1, 2, 5부동산의 원상회복에 따라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인 49,958,952원(= 95,194,212원 - 45,235,260원)⁴⁾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22,222,222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2,222,2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성철

별지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3부동산 24,448,355원(= 공시지가 89,300원/㎡ × 704㎡ × 7/18) + 4부동산 50,081,811원(= 공시지가 77,300원/㎡ × 1,666㎡ × 7/18) + 6부동산 1,156,815원[=

2,313,630원(갑 제11호증의6) × 1/2]

3) 1부동산 9,967,611원(= 공시지가 26,600원/㎡ × 1,349㎡ × 5/18 + 2부동산

19,344,111원(= 공시지가 26,600원/㎡ × 2,618㎡ × 5/18) + 5부동산 15,923,538원(=

공시지가 892원/㎡ × 35,703㎡ × 1/2)

4)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고(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취지 참조).